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299호 신탁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 (신탁계약의 목적)

-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주)와 신탁업자인 (주)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중 부동산 경기 또는 시세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 제2호의 부동산 등(아래에서 정의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폐쇄형”이라 함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단위형”이라 함은 이 신탁계약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설정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9.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10. “관련 법령”이라 함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비롯하여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규정을 총칭한다.



11. “최초(로) 설정”이라 함은 수익자들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최초로 매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최초 설정일”이라 함은 최초로 설정되는 날을 의미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299호”로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폐쇄형
 4. 단위형
 5. 종류형
-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그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소득세법 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종류 C-I 수익증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가 가입할 수 있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
 -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나. 최초 납입금액이 금 30억원 이상인 소득세법 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 변경, 폐지할 수 없다.
- ⑤ 제3항 각 호의 수익증권 간에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



자의 신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들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8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 시(부동산 등의 매입 거래가 무산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일까지로 한다.
 2.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 재산이 회수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을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도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중도상환일까지로 한다.

제6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 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000원을 기준으로 제28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억좌로 한다.
- ②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모집 후 설정하는 수익증권의 총 원본이 금이백일십육억칠천만원(W21,670,000,000)에 미달하거나 부동산시장 등이 급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 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 범위 내에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거나,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그 밖에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신탁금의 납입)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



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좌수에 최초 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 (수익권의 분할)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수익권의 종류가 같은 경우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 ③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수익증권의 양도)

-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수익증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도 제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12조 (수익자명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익자총회의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2.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3.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12조의2 (수익증권의 상장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이 투자신탁의 종류별 수익증권을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장, 매매,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 (자산운용지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팩시밀리, 전자메일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2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 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 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등” 중 실물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산의 임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의2 (자금의 차입)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 투자신탁과 같이 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나. 보험회사

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라.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수익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서 정하는 한도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의3 (부동산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투자신탁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1 년. 다만, 투자신탁이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의 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 년

나. 국외에 있는 부동산: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신탁의 합병·해지

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부동산, 부동산 매출채권, 부동산담보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가액의 100분의 70이상인 유동화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라.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6.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2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 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제16조 제1호에 투자·운용함에 있어 본래의 투자기간 또는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만료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제17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좌를 개설하여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운영자금관리를 위한 계좌
2.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임대차, 금전의 차입, 질권, 부가가치세 등의 관리를 위한 계좌
3.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결제 관리업무에 필요한 계좌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2조 (수익증권의 판매)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판매회사는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별로 해당되는 고객에게 판매한다.

제23조 (판매가격)

-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



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해당사항 없음

제26조 (환매연기)

해당사항 없음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7조 (투자신탁재산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계



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이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의 최초 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좌를 1,000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29조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전부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전부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회계감사)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일
- ③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익분배)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하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또는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을 유보할 수 있고,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지급일: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익영업일 이내
 2.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일정한 날(이하 “분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익분배금 및/또는 이익분배금을 초과한 분배금(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분배기준일 현재 수익자에게 분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분배기준일 전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채투자)

수익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중도상환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중도상환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 ① 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5조 (수익자총회)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본다.
- ⑨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6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 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7조 (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자산운용매입보수 및 자산운용매각보수
2. 다음 각목의 기본보수

- 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자산운용관리보수
- 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 다.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입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 금칠억원(W700,000,000) [매매금액의 약 1.14%으로서, 위 매매금액은 투자하는 실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등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매입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보수율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각차익[매각차익=매각금액-장부가액-판매수수료 총액 및 대출취급수수료 총액-매각부대비용(다만, 매각부대비용은 매각금액의 0.5%를 한도로 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산운용매각보수 지급으로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는 매각차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지급받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한도로 매각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매각부대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부담한다.

1. 자산운용매각보수: 매각차익의 10%. 매각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산운용매각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한다.
2. 지급방법: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만일 부동산 등이 동시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최종 매각대금의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29조에 의한 매 회계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기본보수[당해 종류 수익증권 상당액]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해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
-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 설정액(매일의 투자신탁 설정액[당해 종류 수익증권 상당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및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관리보수 및 신탁업자보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산운용관리보수와 판매회사보수에 관해서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산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설정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1%와 투자신탁 설정액에 각각 보수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 자산운용관리보수율: 연 1,000 분의 0.01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01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0.42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2
 2. 종류 C-I 수익증권
 - 가. 자산운용관리보수율: 연 1,000 분의 0.01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2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0.42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 분의 0.2
- ⑥ 본 조의 규정에 따른 보수에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된다.

제38조 (판매수수료)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 수익증권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의 2% 이내로서 판매회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종류 C-I 수익증권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제39조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제40조 (기타 운용비용 등)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세무자문, 사업성평가, 시장분석, 물리적 실사비용, 부동산 중개, 매입 및 처분 자문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3. 차입금의 이자 및 자금 차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
 4.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5. 부동산의 관리, 증축 및 개발에 관계된 보수 및 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8.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9.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에 지불하는 보수
 11. 이 투자신탁의 설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12. 수익증권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상장수수료 또는 등록수수료, 연부과금 및 제비용
 13.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제외)
 14.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15.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6.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
 17. 부동산 등 매입 또는 매각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부동산의 관리·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
 1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 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익이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전 업무를 수행했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발생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해지 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1조 (신탁계약의 변경)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5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2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또는 배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한다.

제43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3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까지 투자신탁재산에 관련한 미수금 채권과 미지급 채무의 양수도에 관한 사항 및 해지 후 미수금 채권과 미지급 채무의 발생 시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에게 확인을 받은 이후에 해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5조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7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법 제191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조 제3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이 투자신탁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0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⑩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49조 (손해배상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50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관할법원)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효력상실)



이 신탁계약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만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효력상실)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여의도동)

(대표자) 대표이사 신 동 훈



신탁업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대표자) 대표이사 이 승 열

위 지배인 수탁영업부장 김 정 임

